

電子産業의 輸出增大를 위한 制度改善 對政府 建議

— 關稅 및 貿易관계法을 중심으로 —

지난해 電子産業은 '8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 28.0%에 비해 극히 저조한 9.2%의 저성장에 그치면서 현저한 수출둔화 추세를 맞고 있다. 따라서 本會에서는 우리 電子業界가 무역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한 業界의 의견을 수렴하여 關稅 및 貿易관련 法規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였다. 本稿는 同 건의 내용의 발췌·요약한 것임을 밝힌다. <편집자註>

1. 건의대상 법규

- 관세법, 동시행령 및 규칙(고시, 훈령, 예규 등)
- 관세환급특례법, 동시행령 및 규칙(고시, 훈령, 예규 등)
- 외환관리법, 동시행령 및 규칙
- 수출검사법 동시행령 및 규칙

2. 주요건의 내용

1) 관세환급 징수 유예기간 부활

(관세청고시 제88-528호)

- 현행: '88년 10월 1일 부터 환급특례법 시행령에 의해 시행되던 관세환급 징수 유예제도 폐지
- 개선: 동제도 부활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
- 사유: 수출업체, 특히 중소·중견업체의 자금부담 경감

2) 수입면장 등 환급관련 서류상 규격 기재방법 개선

(환법 제5-1-0-2, 환급 22732-1085)

- 현행: 수입면장 등 환급 서류상 규격이 서로 일치해야만 환급 가능
- 개선: 수입면장 등 환급 서류상 표시된 품목번호(HS NO)가 일치하면 환급 가능
- 사유: 전자산업은 규격이 다양해 환급에 많은 행정 수요가 유발되고 최종적으로 수입면장에 기재된 내에서 환급하는 것이

로 품목단위로 해도 차질이 없음.

3) 재수출 감면세 대상기간 연장

(관세법 제29조의 2)

○ 수입면허일로부터 기간

- 정상: 현재 1년 → 2년으로

- 특례: 현재 2년 → 3년으로

○ 사유: 재수출대상 물품(금형 등)이 통상 2~3년 정도가 많음.

4) 개산환급 및 정산 신청시기 연장

(관세환급특례법 제8조)

○ 정산시기

- 정산: 현재 3월이내 → 6월이내로

- 특례: 현재 6개월이내 → 1년이내로

○ 사유: 전자산업의 경우 Sub Local이 대부분 3단계 이상이 되고 전자부품업체의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서류 준비기간을 맞추지 못해 환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.

5) 보세 운송기간 지정기준 현실화

(보세운송요령 제7조)

○ 내용

- 10톤이내: 현재 7일을 → 10일로

- 10톤~20톤: 현재 7일을 → 10일로

○ 사유: 최근 보세운송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운송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현실화가 요구됨.

6) 동일업체의 공장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허용(환령 제10-1-0-2, 환급 제22732-566)

○현행:사업자 등록번호가 구분되더라도 동일업체의 공장간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됨.

○개선:사업자 등록번호가 구분되면 동일업체의 공장간에도 기납증발급 허용

○사유:기납증 발급제도가 환급서류 간소화의 목적이 있고 동일업체라도 공장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구분되어 기납증 발급허용이 안되어 서류 절차가 복잡.

7) 세관의 물품취급시간 허가특례 신설 (관세법 제236조)

○신설특례대상: 지정세관 등록업체가 물품취급 시간외에 단순히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코자 할 때.

○사유: 물품취급시간이 넘어 도착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.

8) 기업이 관세분할납부 등으로 도입한 첨단전자 기자재를 대학 등에 무상양도시 사후관리 특례 (관세법 제28조의 3, 동법 제36조)

○현재 사후관리기간: 5년

○신설특례: 사후관리기간중이라도 기업이 유회화된 기자재를 대학 등에 무상 양도코자 할 때

○사유: 기술입국 지향을 위해 대학 등의 기자재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데 비추어 2~3년이면 유회화된 기자재를 대학에 기증

9) 개산환급금 환급 신청 서류중 선적확인서 생략 (관세청고시 제11-5조)

○현행 환급금 환급 신청서류

- 수출면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
- 선적 확인서 또는 대금결제 확인 서류

○개선: 선적확인서 또는 대금결제 확인서류를 생략하고 대신 1개월 이내에 수출 미이행시 환급금의 110% 상당액 징수 벌칙 삽입

○사유: 극소수 수출 미이행자를 우려해 전업체가 항상 선적확인서까지 첨부토록해 절차 복잡, 미이행자는 대신 강한 벌칙 부과.

10) 컨테이너 내장 상태로 물품검사요령 개선 (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 제2-0-3조 및

제3-2-7조)

○현행: 지정세관 등록업체가 단일외주 또는 동일물품을 수입코자 할 때에는 컨테이너 내장상태를 장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검사의 편의를 위해 컨테이너 내의 검사통로가 마련되어야 함.

○개선: 컨테이너 내장상태로 장치할 수 있도록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을 검사할 경우는 검사통로 없이도 검사 가능.

○사유: 컨테이너 내장상태로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요건이 지정세관 등록업체로서 동일물품의 경우로 국한되고 있어 원래 취지대로 물품반입의 신속성을 위해 검사통로 없이도 검사가 가능토록 개선. 검사통로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실제로는 전량 하역후 검사를 하고있어 당초 이 제도 설치의 의미가 없음.

11) B/L분할 수입 대상물품에 전자부품을 추가 (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 제3-1-3조)

○현행: 원목, 고지, 펄프 등

○추가: 전자부품

○사유: 전자부품의 경우도 사용 수량이 많아 외형은 작지만 수량으로는 대량화물과 성격이 동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대량으로 수입할 때가 많아 B/L을 분할해 수입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음.

12) 연지급 수입대상품목 확대 (외국환관리규정 제9-117조)

○현재: 중량세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으로서 실행관세율이 10%이하 품목 → 20% 이하 품목

○사유: 전자제품의 경우 실행관세율이 10% 이하 품목이 거의 없어 연지급 수입제도 이용이 사실상 어려움.

13) 수출검사 완화

(수출검사감면운영요령 제2조의 2)

○내용: 바이어검사 승인품목은 수출검사 생략

○사유: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절차 간소화 및 검사료 부담 경감